

2003년 12월 2일

청각장애인협회(농아인협회) 여성부와의 "차별 사례 나누기" 간담회

참가자 : 청각장애여성 : 최민자, 김영희, 조태순, 김영심, 봉천자, 김영자, 김미경 통역:박미옥

법제위 여성팀 : 이호선, 김광이, 이희정, 박지주

1. 가족내 차별

- 형제, 자매끼리 언어소통이 안돼
- 비장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함(가정 대소사 참가 어려움)
- 청각장애여성이 번돈을 어머니가 모두 가져감.
- 필요없는 아이로 취급(장애물로 가족들은 인식)
- 가족중에 청각장애여성이 있어서 형제자매결혼 파혼.

2. 교육내 차별

- 공공육보다 직업교육 장려
- 받아쓰기시간에 할 수 없음.
- 일반학교 통역 없어 힘들
- 선생님 : 시집이나 가거나, 기술을 배우라고 권유
-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내 수업내용은 배우 낮음(고3수준에서 중1.2영어 공부함.)
- 대학교육시 비장애 위주의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함.

3. 노동에서의 차별

- 같은 청각장애 동료도 청각장애여성에게만 커피심부름을 시킴.
- 말로 또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희롱 심각.
- 청각장애여성이 청각장애남성보다 구조조정 1순위
- 남성에 비해 월급에서 차이가 남.
- 문자보내는 것을 사업주는 싫어하며, 문자보내면 해고한다고 협박함.
- 회식때 통역하는 사람없어 청각장애인을 술만 마시게됨.

4. 양육 및 건강 관련

- 아이가 우는 것을 몰라 힘들.
- 학교행사에 관련한 정보입수가 되지않음.
- 부모가 청각장애여성인 것을 알고, 담당교사가 선물을 수시로 요구함.
- 병원이용할 때 통역이 잘 안돼 매우 어려움.(아픈 것을 잘 설명해주지 못하는 통역을 만나면, 쓸데없는 검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음)
- 병원을 이용할 경우 통역이 청각장애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비밀보장하지 않고, 소문을 내는 경우가 많음.